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8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57조제1항”을 “영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7조제7항 및 제9항”을 “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7조제8항”을 “영 제57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제2항 중 “영 제59조제9항”을 “영 제59조제10항”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기관란 ⑥ 중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란 ⑦ 중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시·도(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쪽 규제자유특구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신청기관 제출서류(지정 시)란 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쪽 작성요령 / 제출 방식란 ⑥ 중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란 ⑦ 중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시·도(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란 ⑧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란 ⑭ 중 “영 제62조”를 “영 제64조”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특구 계획	⑧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⑨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⑩	규제자유특구의 면적					
	⑪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⑫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명칭 및 시행기간					
	⑬	규제자유특구사업자					
	⑭	규제특례등의 내용	규제특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⑮	5년간 총사업비 (억원)	1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2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3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4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5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시·도지사의”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의”로 하며, “관할 시·도지사에게”를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로 하고, “시·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86조제4항·제6항”을 “제86조제4항·제9항”으로 하고, “제57조제7항·제9항”을 “제57조제8항·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86조제6항 단서”를 “제86조제9항 단서”로 하고, “제57조제8항”을 “제57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그 밖의 안내 사항란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중 “제59조제9항”을 “제5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6호 중 “시·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같은 조 제8항 단서” 를 “같은 조 제10항 단서” 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90조제8항 단서”를 “제90조제10항 단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사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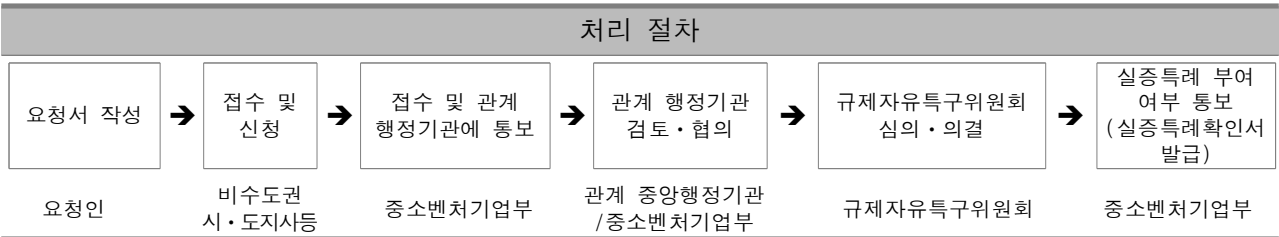
년월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사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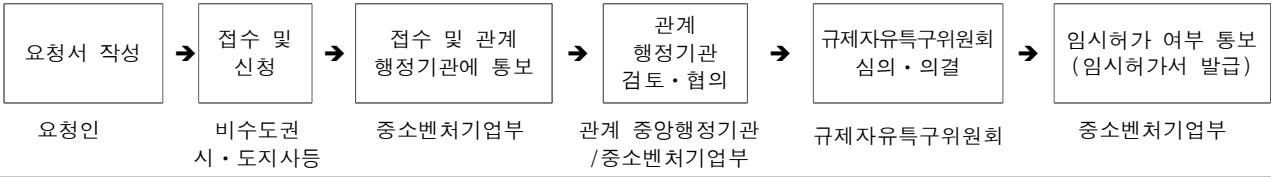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 절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20236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78호, 2024. 7. 30.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요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